

연세대학교 반성폭력 학칙제정운동, 어디까지 어떻게 왔나?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윤

1. 대략의 흐름

많은 학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 학교 역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이후부터 반성폭력 학칙제정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그 이전에도 학내 여성운동 단위를 중심으로 반성폭력 학칙을 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99년에 여성주의 총여학생회가 건설되지 못함으로 인해 구체적인 운동으로 만들어지지는 못했다. 2000년을 맞이하면서 반성폭력 학칙제정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가 되었고 학내 여성주의자들도 반성폭력 학칙제정을 2000년의 중요한 당면 과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우선 총여학생회는 학내 여성자치단체와 단위 학생회 및 관심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이하 연성뿌연)'를 제안하였고 연성뿌연은 학칙제정운동의 흐름을 중심으로 만들어나갔다. 2000년 연세에서는 연성뿌연의 제안으로 새터 기간의 성폭력을 예방 및 해결하고자 '새터 반성폭력 내규'를 제정하였고 이로 인해 학내에서 반성폭력 담론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었다.

학교측에서 일방적으로 학칙을 제정해버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12대 총여학생회가 여학생처에 학칙 제정에 대해 문의해본 결과 학교측에서 학칙을 제정할 의사가 있으며 이미 학칙가안을 작성하고 있는 중인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학교측에서는 학칙 제정 및 시행과정에서 학생측의 참여를 보장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도 함께 확인되었다. 성폭력 사건이 공개될 우려가 크고 비교육적이라는 것이 학교측의 이유였다. 이러한 학교측의 일방적인 학칙제정 움직임을 확인한 연성뿌연은 학생, 교수, 교직원 등 동수로 참여하는 학칙제정위원회를 건설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요구안이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연성뿌연은 학교측이 이 요구안을 받아들일도록 하기 위한 투쟁을 준비해나갔다. 이 과정에서 총여학생회는 학부총학생회, 대학원총학생회에 제안하여 반성폭력 학칙제정을 위한 연대체를 구성하기도 하였다. 학칙제정 위원회 건설이라는 요구안은 교육투쟁 과정에서 받아들여짐으로써 실제적인 투쟁 없이 학칙제정위원회 건설이라는 성과가 얻어졌다. 이후 몇 차례에 걸친 성폭력 대책위원회 이후 지난 10월 10일에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공표되었다. 현재는 규정의 실제적 시행을 위한 시행세칙을 제정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2. 대중적 사업

새터 반성폭력 내규 제정운동은 그 자체로도 의미 있는 운동이었지만 학칙제정운동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학내의 동의 기반을 넓혀 나가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를 제정하면서 성폭력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좁은 범위에서나마 공유하였기 때문에 학칙제정과정에서 학우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 사업이 어느 정도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학칙제정 위원회 건설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전에는 서명 운동, 팸판매 등을 통해 학우들에게 학칙의 필요성을 알려내는 작업을 주로 진행하였으며 그동안 학내에서 있었던 성폭력 사례를 공개하는 자보 및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기도 하였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인식 기반을 넓혀나가기 위한 교양학교도 진행하였다.

이 시기에 연성뿌연은 학교측에서 가안을 받아 그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어 내고 학교측 안과 연성뿌연 수정안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공청회에서 나온 질문이나 의견들을 반영하여 최종 수정안이 나왔고 이 최종 수정안을 가지고 학교측과 협상을 진행하였다.

1) 학칙제정위원회 건설은 교육투쟁과정에서 열린 학생총회의 특별 요구안으로 상정되어 교육투쟁 협상안에 포함되었다. 이 요구안은 협상과정에서 받아들여져 반성폭력 학칙을 제정하는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건설되었다. 학교측에서 받아들여지기 전에 반성폭력 학칙제정을 위한 위원회 건설은 다른 교육투쟁 요구안에 비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여겨졌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 등으로 인해 어느 정도 학내에서 성폭력에 대한 논의가 익숙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반성폭력 학칙 제정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은 매우 저조했던 것 같다. 따라서 연성뿌연에서 벌였던 대중적 사업들도 학우들의 참여도 측면만 본다면 그다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없다. 학칙제정 과정에서 학칙의 필요성이나 성폭력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학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학우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학칙안 자체가 법조문과 유사한 형태로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다 학내에서 성폭력에 대한 기본적 인식조차 공유되고 있지 못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학우들의 의견 수렴이 어느 수위까지 가능할 것인지 혹은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3. 학교측과의 협상과정

우리 학교는 학칙제정 위원회의 건설이 교육투쟁 과정에서 이루어진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 교육투쟁 협상으로 인해 건설된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학생과 교수가 각각 4인씩 참여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이 형태는 나중에 제정된 규정안에 명시된 성폭력 대책위원회의 모태가 되었다.

학교측과의 협상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역시 성폭력 대책위원회의 학생 참여부분이었다. 위에서 썼듯이 학교측은 학생이 참여하면 성폭력 사건이 새어나갈 우려가 크고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학생의 참여에 대해 계속 난색을 표명했다. 그러나 학생측의 지속적인 압력행사에 따라 학교측은 마지못해 학생 참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학생참여를 받아들이기로 잠정적 결론이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학생위원 수를 줄여보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결국 학생이 피해자 혹은 가해자로 연루된 사건에만 학생위원을 참여토록 결론을 짓게 되었다. 학교 행정은 교수들의 몫이라는 학교측의 발상이 다시 한번 확인된 순간이었다.

4. 제정된 규정안

정의: 성폭력의 정의 부분에서 우리 학교는 광의의 성폭력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1항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 2항에서는 성희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2항의 경우는 학칙이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의해 제정되었기 때문에 성희롱에 대한 내용을 이와같이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적용범위: 원래 이 부분에 동조자 규정을 넣으려고 하였는데 학교측에서 '굳이 동조자라고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동조자도 역시 가해자가 아니냐'라고 주장해서 동조자에 대한 명시가 빠졌다.

피해자 중심의 원칙: 이 부분은 원래 학교측 가안에서는 없었던 부분이다. 학생측에서 주장한 부분으로 이상하게도 별 무리없이 받아들여 졌으나 결국 '피해자의 입장에서'라는 다소 객관적인 문구로 손질되었다.

성폭력 대책위원회의 구성: 교학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학생처장, 여학생처장, 기획실장이 참여하고 교수, 학생(총학, 총여, 대학원총), 교직원이 각각 3인씩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학생과 교직원은 각각 학생과 교직원이 연루된 사건에 관한 회의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최소 7인, 최대 13인이 참여하게 되는데 일단 인원이 너무 많고 당연직 위원도 많은 편이다.

징계 및 조치: 학교측 가안에 따르면 성폭력 대책위는 학교의 각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발의할 수만 있게 되어있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정학, 제적, 감봉 등의 다소 수위가 높은 것들뿐인데다 가해자 재교육의 효과도 전혀 없기 때문에 연성뿌연에서는 공개실명사과, 재교육, 자원봉사 등의 처벌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학교측에 이러한 자체적 처벌을 삽입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처음에 학교측은 징계 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기관에서 자체 처벌을 내릴 수는 없다고 하다가 결국 '조치'라는 표현으로 고치고 이를 받아들였다.